

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规定

(2023年3月10日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第66号公布 自2023年4月15日起施行)

第一条 为了预防和制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根据《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以下简称反垄断法），制定本规定。

第二条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以下简称市场监管总局）负责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反垄断统一执法工作。

市场监管总局根据反垄断法第十三条第二款规定，授权各省、自治区、直辖市市场监督管理部门（以下称省级市场监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反垄断执法工作。

本规定所称反垄断执法机构包括市场监管总局和省级市场监管部门。

第三条 市场监管总局负责查处下列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

- (一) 跨省、自治区、直辖市的；
- (二) 案情较为复杂或者在全国有重大影响的；
- (三) 市场监管总局认为有必要直接查处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

(2023년 3월 10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66호 공포, 2023년 4월 15일 시행)

제1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이하 '반독점법'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이하 '시장총국'으로 약칭)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반독점법 통일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시장총국은 반독점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 성·자치구·직할시 시장감독관리부서 (이하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로 약칭)에 권한을 부여하고 당해 행정구역 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시장총국과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를 포함한다.

제3조 시장총국은 아래 열거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조사처리를 담당한다:

- (1) 성·자치구·직할시의 경계를 넘는 경우;
- (2) 안건의 정황이 비교적 복잡하거나 전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3) 시장총국이 직접 조사처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前款所列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市场监管总局可以指定省级市场监管部门查处。

省级市场监管部门根据授权查处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时，发现不属于本部门查处范围，或者虽属于本部门查处范围，但有必要由市场监管总局查处的，应当及时向市场监管总局报告。

第四条 反垄断执法机构查处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时，应当平等对待所有经营者。

第五条 相关市场是指经营者在一定时期内就特定商品或者服务（以下统称商品）进行竞争的商品范围和地域范围，包括相关商品市场和地域市场。

界定相关市场应当从需求者角度进行需求替代分析。当供给替代对经营者行为产生的竞争约束类似于需求替代时，也应当考虑供给替代。

界定相关商品市场，从需求替代角度，可以考虑需求者对商品价格等因素变化的反应、商品的特征与用途、销售渠道等因素。从供给替代角度，可以考虑其他经营者转产的难易程度、转产后所提供商品的市场竞争力等因素。

界定平台经济领域相关商品市场，可以根据平台一边的商品界定相关商品市场，也可以根据平台所涉及的多边商品，将平台整体界定为一个相关商品市场，或者分别界定多个相关商品市场，并考虑各相

전항에 열거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시장총국이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조사처리하게 할 수 있다.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수권에 근거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조사처리 할 때, 당해 부서의 조사처리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발견하거나, 당해 부서의 조사처리 범위의 속하지만 시장총국이 조사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시 모든 경영자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제5조 관련 시장은 관련 상품 시장 및 관련 지역 시장을 포함하여 경영자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으로 통칭)를 놓고 경쟁하는 상품 범위 및 지역 범위를 말한다.

관련 시장을 확정하려면 수요자 관점에서 수요 대체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공급 대체가 경영자의 행동에 미치는 경쟁 제약이 수요 대체와 유사한 경우 공급 대체도 고려한다.

관련 상품 시장을 확정함에 있어 수요 대체 관점에서 상품 가격과 같은 요인의 변화에 대한 수요자의 반응, 상품의 특성 및 용도, 판매 경로와 같은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공급 대체의 관점에서 다른 경영자의 생산 전환의 어려움, 생산 전환 후 제공되는 상품의 시장 경쟁력 및 기타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플랫폼 경제 분야의 관련 상품 시장을 확정하려면 플랫폼 한쪽의 상품에 따라 관련 상품 시장을 확정할 수 있으며, 플랫폼과 관련된 다자 상품에 따라 플랫폼 전체를 하나의 관련 상품시장으로 확정하거나

关商品市场之间的相互关系和影响。

界定相关地域市场，从需求替代角度，可以考虑商品的运输特征与成本、多数需求者选择商品的实际区域、地域间的贸易壁垒等因素。从供给替代角度，可以考虑其他地域经营者供应商品的及时性与可行性等因素。

第六条 市场支配地位是指经营者在相关市场内具有能够控制商品价格、数量或者其他交易条件，或者能够阻碍、影响其他经营者进入相关市场能力的市场地位。

本条所称其他交易条件是指除商品价格、数量之外能够对市场交易产生实质影响的其他因素，包括商品品种、商品品质、付款条件、交付方式、售后服务、交易选择、技术约束等。

本条所称能够阻碍、影响其他经营者进入相关市场，包括排除其他经营者进入相关市场，或者延缓其他经营者在合理时间内进入相关市场，或者导致其他经营者虽能够进入该相关市场但进入成本大幅提高，无法与现有经营者开展有效竞争等情形。

第七条 根据反垄断法第二十三条第一项，确定经营者在相关市场的市场份额，可以考虑一定时期内经营者的特定商品销售金额、销售数量或者其他指标在相关市场所占的比重。

여러 관련 상품 시장을 별도로 확정하고 각 관련 상품 시장 간의 상호 관계와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관련 지역 시장을 확정함에 있어 수요 대체의 관점에서 상품의 운송 특성과 비용, 대부분의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실제 지역, 지역 간 무역 장벽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공급 대체의 관점에서 다른 지역 경영자의 상품 공급의 적시성과 타당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제6조 시장지배적지위란 경영자가 관련시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으로 통칭)의 가격·수량 또는 기타 거래조건을 통제할 수 있거나, 다른 경영자의 관련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장지위를 말한다.

본 조에서 기타 거래조건이라 함은 상품의 가격·수량 이외에도 시장거래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요소를 말하며, 상품종류·상품품질·지불조건·교부방식·애프터서비스·거래선택·기술제한 등을 포함한다.

본 조에서 다른 경영자의 관련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함은 다른 경영자의 관련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다른 경영자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관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다른 경영자가 해당 관련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나 진입비용을 대폭 높여, 현존하는 경영자와 유효한 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의 정형을 포함한다.

제7조 반독점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영자의 관련 시장 점유율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일정 시간 내에 경영자의 특정 상품 판매액·판매량 또는 기타지표가 관련 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중을 고

分析相关市场竞争状况，可以考虑相关市场的发展状况、现有竞争者的数量和市场份额、市场集中度、商品差异程度、创新和技术变化、销售和采购模式、潜在竞争者情况等因素。

第八条 根据反垄断法第二十三条第二项，确定经营者控制销售市场或者原材料采购市场的能力，可以考虑该经营者控制产业链上下游市场的能力，控制销售渠道或者采购渠道的能力，影响或者决定价格、数量、合同期限或者其他交易条件的能力，以及优先获得企业生产经营所必需的原料、半成品、零部件、相关设备以及需要投入的其他资源的能力等因素。

第九条 根据反垄断法第二十三条第三项，确定经营者的财力和技术条件，可以考虑该经营者的资产规模、盈利能力、融资能力、研发能力、技术装备、技术创新和应用能力、拥有的知识产权等，以及该财力和技术条件能够以何种方式和程度促进该经营者业务扩张或者巩固、维持市场地位等因素。

第十条 根据反垄断法第二十三条第四项，确定其他经营者对该经营者在交易上的依赖程度，可以考虑其他经营者与该经营者之间的交易关系、交易量、交易持续时间、在合理时间内转向其他交易相对人的难易程度等因素。

려할 수 있다.

관련시장의 경쟁상황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관련시장의 발전상황, 현존하는 경쟁자의 수 및 시장점유율, 시장집중도, 상품의 차이 정도, 혁신 및 기술변화, 판매·구매 모델, 잠재경쟁자의 상황 등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제8조 반독점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영자의 판매시장 또는 원재료 구매시장에서의 통제 능력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경영자의 산업체인 상하류 시장 통제 능력, 판매 경로 또는 구매경로 통제 능력, 가격·수량·계약기한 또는 기타 거래조건에 영향을 주거나 결정하는 능력, 그리고 기업의 생산경영에 필수적인 원료·반제품·부품·관련 설비 및 투입이 필요한 기타 자원의 능력 등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제9조 반독점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영자의 재력과 기술조건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경영자의 자산규모·이윤능력·용자능력·연구개발능력·기술장비·기술혁신 및 응용능력·보유한 지식재산권 등을 고려할 수 있고, 그 재력과 기술조건이 어떤 방식과 정도로 그 경영자의 업무확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 또는 시장지위를 공고하게 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지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제10조 반독점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타 경영자의 해당 경영자에 대한 거래상 의존 정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기타 경영자와 해당 경영자의 거래관계·거래량·거래지속시간·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거래상대방으로의 전환 난이도 등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第十一条 根据反垄断法第二十三条第五项，确定其他经营者进入相关市场的难易程度，可以考虑市场准入、获取必要资源的难度、采购和销售渠道的控制情况、资金投入规模、技术壁垒、品牌依赖、用户转换成本、消费习惯等因素。

第十二条 根据反垄断法第二十三条和本规定第七条至第十一条规定认定平台经济领域经营者具有市场支配地位，还可以考虑相关行业竞争特点、经营模式、交易金额、交易数量、用户数量、网络效应、锁定效应、技术特性、市场创新、控制流量的能力、掌握和处理相关数据的能力及经营者在关联市场的市场力量等因素。

第十三条 认定两个以上的经营者具有市场支配地位，除考虑本规定第七条至第十二条规定的因素外，还应当考虑经营者行为一致性、市场结构、相关市场透明度、相关商品同质化程度等因素。

第十四条 禁止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以不公平的高价销售商品或者以不公平的低价购买商品。

认定“不公平的高价”或者“不公平的低价”，可以考虑下列因素：

(一) 销售价格或者购买价格是否明显高于或者明显低于其他经营者在相同或者相似市场条件下销售或者购买同种商品或者可比较商品的价格；

(二) 销售价格或者购买价格是否明显高于或者明显低于同一经

제11조 반독점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타 경영자의 관련 시장 진입 난이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시장 진입·필수자원 획득 난이도·구매 및 판매 경로 통제 상황·자금 투입 규모·기술 장벽·브랜드 의존·사용자의 전환 비용·소비 습관 등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제12조 반독점법 제23조 및 본 규정 제7조부터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플랫폼 경제분야 경영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보유여부를 인정함에 있어서, 관련 업계의 경쟁 특징·경영방식·거래금액·거래수량·사용자 수량·네트워크효과·고착효과·기술특성·시장혁신·트래픽 제어능력·관련 데이터 장악 및 처리능력 그리고 경영자의 관련시장에서의 역량 등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제13조 두 개 이상 경영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보유 여부를 인정함에 있어서, 본 규정 제7조부터 제12조에 규정된 요소 외에, 경영자 행동 일치성·시장구조·관련 시장 투명도·관련 상품의 균질화 정도 등의 요소도 고려할 수 있다.

제14조 시장지배적지위를 보유한 경영자가 불공정하게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불공정하게 높은 가격” 및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에 열거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1) 판매가격 또는 구매가격이 다른 경영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장 조건 하에서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동일한 상품 또는 비교가능한 상품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현저하게 낮은지 여부；

(2) 판매가격 또는 구매가격이 동일한 경영자가 시장상황이 동일

营者在其他相同或者相似市场条件区域销售或者购买同种商品或者可比较商品的价格；

(三) 在成本基本稳定的情况下，是否超过正常幅度提高销售价格或者降低购买价格；

(四) 销售商品的提价幅度是否明显高于成本增长幅度，或者购买商品的降价幅度是否明显高于交易相对人成本降低幅度；

(五) 需要考虑的其他相关因素。

涉及平台经济领域，还可以考虑平台涉及多边市场中各相关市场之间的成本关联情况及其合理性。

认定市场条件相同或者相似，应当考虑经营模式、销售渠道、供求状况、监管环境、交易环节、成本结构、交易情况、平台类型等因素。

第十五条 禁止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没有正当理由，以低于成本的价格销售商品。

认定以低于成本的价格销售商品，应当重点考虑价格是否低于平均可变成本。平均可变成本是指随着生产的商品数量变化而变动的每单位成本。涉及平台经济领域，还可以考虑平台涉及多边市场中各相关市场之间的成本关联情况及其合理性。

本条所称“正当理由”包括：

(一) 降价处理鲜活商品、季节性商品、有效期限即将到期的商品或者积压商品的；

하거나 유사한 다른 지역에서 동종 또는 비교가능한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구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현저하게 낮은지 여부;

(3) 원가가 기본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폭을 초과하여 판매가격을 인상했거나 구매가격을 인하했는지 여부;

(4) 상품의 판매가격 인상폭이 원가 증가폭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상품의 구매가격 인하폭이 거래 상대방의 원가 감소폭보다 현저하게 낮은지 여부 ;

(5) 고려할 필요가 있는 기타 관련 요소.

플랫폼 경제분야와 관련하여 플랫폼의 다면 시장에서 관련 시장 간의 비용 연관성과 합리성도 고려할 수 있다.

시장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판매경로·판매방식·공급 및 수요 상황·감독관리 환경·거래단계·원가구조·거래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15조 시장지배적지위를 보유한 경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지를 인정함에 있어서,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은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평균가변비용은 생산된 상품의 수량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단위당 원가를 말한다. 플랫폼 경제 분야와 관련하여, 플랫폼이 다면 시장에서 각 관련 시장 간의 비용 관련 상황과 그 합리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가격을 인하하여 신선상품·계절성 상품·유효기간이 곧 도래하는 상품 또는 재고상품을 처리하는 경우;

- (二) 因清偿债务、转产、歇业降价销售商品的；
- (三) 在合理期限内为推广新商品进行促销的；
- (四) 能够证明行为具有正当性的其他理由。

第十六条 禁止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没有正当理由，通过下列方式拒绝与交易相对人进行交易：

- (一) 实质性削减与交易相对人的现有交易数量；
- (二) 拖延、中断与交易相对人的现有交易；
- (三) 拒绝与交易相对人进行新的交易；
- (四) 通过设置交易相对人难以接受的价格、向交易相对人回购商品、与交易相对人进行其他交易等限制性条件，使交易相对人难以与其进行交易；

(五) 拒绝交易相对人在生产经营活动中，以合理条件使用其必需设施。

在依据前款第五项认定经营者滥用市场支配地位时，应当综合考虑以合理的投入另行投资建设或者另行开发建造该设施的可行性、交易相对人有效开展生产经营活动对该设施的依赖程度、该经营者提供该设施的可能性以及对自身生产经营活动造成的影响等因素。

本条所称“正当理由”包括：

- (一) 因不可抗力等客观原因无法进行交易；
- (二) 交易相对人有不良信用记录或者出现经营状况恶化等情况，影响交易安全；

- (2) 채무상환·생산전환·휴업으로 인해 상품판매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 (3)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상품 보급을 위해 판촉을 하는 경우;
- (4) 행위가 정당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이유.

제16조 시장지배적지위를 보유한 경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아래 열거한 방식으로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거절하는 것을 금지한다 :

- (1) 거래상대방과의 기존 거래 수량을 실질적으로 삭감 ;
- (2) 거래상대방과의 기존 거래를 지연·중단 ;
- (3) 거래상대방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 ;
- (4) 거래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격설정, 거래상대방에게 상품 판매, 거래상대방과의 다른 거래 등 제한적인 조건을 부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거래를 어렵게 하는 것;

(5) 거래상대방이 생산경영활동 중 합리적인 조건으로 그 필수설비를 사용하는 것을 거절

전항 (5)에 의거하여 경영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인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투입으로 해당설비에 별도로 투자하여 건설하거나 해당설비를 별도로 개발하여 건조할 수 있는 가능성·거래상대방의 유효한 생산경영활동이 해당설비에 대해 의존하는 정도·해당 경영자가 해당설비를 제공할 가능성 및 자신의 생산경영활동에 대해 미치는 영향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

- (1) 불가항력 등 객관적인 이유로 거래 불가;
- (2) 거래상대방에게 신용불량 기록이 있거나 경영상황 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거래의 안전에 영향을 미침;

- (三) 与交易相对人进行交易将使经营者利益发生不当减损；
- (四) 交易相对人明确表示或者实际不遵守公平、合理、无歧视的平台规则
- (五) 能够证明行为具有正当性的其他理由。

第十七条 禁止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没有正当理由，从事下列限定交易行为：

- (一) 限定交易相对人只能与其进行交易；
- (二) 限定交易相对人只能与其指定的经营者进行交易；
- (三) 限定交易相对人不得与特定经营者进行交易。

从事上述限定交易行为可以是直接限定，也可以是采取惩罚性或者激励性措施等方式变相限定。

本条所称“正当理由”包括：

- (一) 为满足产品安全要求所必需；
- (二) 为保护知识产权、商业秘密或者数据安全所必需；
- (三) 为保护针对交易进行的特定投资所必需；
- (四) 为维护平台合理的经营模式所必需；
- (五) 能够证明行为具有正当性的其他理由。

第十八条 禁止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没有正当理由搭售商品，或者在交易时附加其他不合理的交易条件：

- (一) 违背交易惯例、消费习惯或者无视商品的功能，利用合同条款或者弹窗、操作必经步骤等交易相对人难以选择、更改、拒绝的

- (3)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진행이 경영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킴;
- (4) 거래상대방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플랫폼 규칙을 명시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
- (5) 행위에 정당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이유.

제17조 시장지배적지위를 보유한 경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아래 열거한 거래제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 (1) 거래상대방이 그와만 거래하도록 제한；
- (2) 거래상대방이 그가 지정한 경영자와만 거래하도록 제한；
- (3) 거래상대방이 특정 경영자와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

상술한 거래제한 행위는 직접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징벌 또는 인센티브 제공 등 방식으로 변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다.

본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상품의 안전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 (2)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보호 또는 데이터 보안에 필요한 경우;
- (3) 거래진행을 위한 특정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4) 합리적인 플랫폼 경영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5) 행위에 정당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이유.

제18조 시장지배적지위를 보유한 경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을 끼워팔거나, 거래시 기타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 (1) 거래관례·소비습관 등을 위배하거나 상품의 기능과 무관하게, 계약조건이나 팝업창, 필수조작 절차 등 거래상대방이 선택, 변경, 거

- 方式，将不同商品捆绑销售或者组合销售；
- (二) 对合同期限、支付方式、商品的运输及交付方式或者服务的提供方式等附加不合理的限制；
 - (三) 对商品的销售地域、销售对象、售后服务等附加不合理的限制；
 - (四) 交易时在价格之外附加不合理费用；
 - (五) 附加与交易标的无关的交易条件。

本条所称“正当理由”包括：

- (一) 符合正当的行业惯例和交易习惯；
- (二) 为满足产品安全要求所必需；
- (三) 为实现特定技术所必需；
- (四) 为保护交易相对人和消费者利益所必需
- (五) 能够证明行为具有正当性的其他理由。

第十九条 禁止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没有正当理由，对条件相同的交易相对人在交易条件上实行下列差别待遇：

- (一) 实行不同的交易价格、数量、品种、品质等级；
- (二) 实行不同的数量折扣等优惠条件；
- (三) 实行不同的付款条件、交付方式；
- (四) 实行不同的保修内容和期限、维修内容和时间、零配件供应、技术指导等售后服务条件。

条件相同是指交易相对人之间在交易安全、交易成本、规模和能力、信用状况、所处交易环节、交易持续时间等方面不存在实质性影

- 절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거나 조합하여 판매;
- (2) 계약기한·지불방식·상품의 운송 및 교부방식 또는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부가;
 - (3) 상품의 판매지역·판매대상·애프터서비스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부가;
 - (4) 거래시 가격 이외에 불합리한 비용을 부가;
 - (5) 거래대상물과 무관한 거래조건을 부가.

본 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정당한 업계 관례 및 거래 습관에 부합 ;
- (2) 상품의 안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
- (3) 특정 기술 실현을 위해 필요;
- (4) 거래상대방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
- (5) 행위에 정당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이유.

제19조 시장지배적지위를 보유한 경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조건이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조건에 있어서 아래 열거한 차별대우하는 것을 금지한다:

- (1) 동일하지 않은 거래가격·수량·상품종류·품질등급을 실행;
- (2) 동일하지 않은 수량할인 등 우대조건을 실행;
- (3) 동일하지 않은 지불조건·교부방식을 실행;
- (4) 동일하지 않은 수리보증 내용 및 기한·유지보수 내용 및 시간·부품공급·기술지도 등 애프터서비스 조건을 실행;

조건이 서로 동일하다는 것은 거래 상대방 사이에 거래안전·거래원가·규모 및 능력·신용상황·처한 거래단계·거래 지속시간 등의 방면에

响交易的差别。交易中依法获取的交易相对人的交易数据、个体偏好、消费习惯等方面存在的差异不影响认定交易相对人条件相同。

本条所称“正当理由”包括：

- (一) 根据交易相对人实际需求且符合正当的交易习惯和行业惯例，实行不同交易条件；
- (二) 针对新用户的首次交易在合理期限内开展的优惠活动；
- (三) 基于公平、合理、无歧视的平台规则实施的随机性交易；
- (四) 能够证明行为具有正当性的其他理由。

第二十条 市场监管总局认定其他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应当同时符合下列条件：

- (一) 经营者具有市场支配地位；
- (二) 经营者实施了排除、限制竞争行为；
- (三) 经营者实施相关行为不具有正当理由；
- (四) 经营者相关行为对市场竞争具有排除、限制影响。

第二十一条 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不得利用数据和算法、技术以及平台规则等从事本规定第十四条至第二十条规定的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

第二十二条 反垄断执法机构认定本规定第十四条所称的“不公平”和第十五条至第二十条所称的“正当理由”，还应当考虑下列因素：

서 거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없는 것을 말한다. 거래 중 합법적으로 취득한 거래상대방의 거래데이터, 개인 선호도, 소비습관 등의 차이는 거래상대방의 동일 조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조에서 “정당한 이유”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거래상대방의 실제 수요에 따라, 그리고 정당한 거래습관 및 업계 관례에 부합하여, 동일하지 않은 거래조건을 실행;
- (2) 신규 이용자의 첫 거래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시하는 우대활동;
- (3) 공정, 합리, 비차별적인 플랫폼 규칙에 의거한 무작위 거래;
- (4) 행위에 정당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이유.

제20조 시장총국이 기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아래 열거한 조건에 동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 (1) 경영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보유;
- (2) 경영자가 경쟁 배제·제한행위를 실시;
- (3) 경영자가 실시한 관련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
- (4) 경영자의 관련 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영향을 보유.

제21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하여 본 규정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반독점 법집행기구는 본 규정 제14조의 “불공정”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함에 있어서, 아래 열거한

- (一) 有关行为是否为法律、法规所规定；
- (二) 有关行为对国家安全、网络安全等方面的影响；
- (三) 有关行为对经济运行效率、经济发展的影响；
- (四) 有关行为是否为经营者正常经营及实现正常效益所必需；
- (五) 有关行为对经营者业务发展、未来投资、创新方面的影响；
- (六) 有关行为是否能够使交易相对人或者消费者获益；
- (七) 有关行为对社会公共利益的影响。

第二十三条 供水、供电、供气、供热、电信、有线电视、邮政、交通运输等公用事业领域经营者应当依法经营，不得滥用其市场支配地位损害消费者利益和社会公共利益。

第二十四条 反垄断执法机构依据职权，或者通过举报、上级机关交办、其他机关移送、下级机关报告、经营者主动报告等途径，发现涉嫌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

第二十五条 举报采用书面形式并提供相关事实和证据的，反垄断执法机构应当进行必要的调查。书面举报一般包括下列内容：

- (一) 举报人的基本情况；
- (二) 被举报人的基本情况；
- (三) 涉嫌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相关事实和证据；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 (1) 관련 행위가 법률·법규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2) 관련 행위가 국가안전, 사이버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
- (3) 관련 행위가 경제 운영 효율·경제발전에 대해 미치는 영향;
- (4) 관련 행위가 경영자의 정상적인 경영 및 정상적인 효과와 이익을 위해 필요한지 여부;
- (5) 관련 행위가 경영자의 업무발전·미래투자·혁신 방면에 미치는 영향;
- (6) 관련 행위가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7) 관련 행위가 사회 공익에 미치는 영향;

제23조 물 공급, 전기 공급, 가스 공급, 난방 공급, 전기 통신, 케이블 TV, 우편, 교통운송 등 공공사업 분야의 경영자는 법에 따라 경영해야 하며, 그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의 이익과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직권에 의하거나, 신고·상급기관의 지시·다른 기관의 이송·하급기관의 보고·경영자의 자발적인 보고 등의 경로를 통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혐의를 발견한다.

제25조 신고가 서면의 형식을 취하고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반독점 법집행기구는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서면 신고는 일반적으로 아래 열거한 내용을 포함 한다:

- (1) 신고인의 기본 상황;
- (2) 피신고인의 기본 상황;
-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혐의와 관련된 사실과 증거;

(四) 是否就同一事实已向其他行政机关举报或者向人民法院提起诉讼。

反垄断执法机构根据工作需要，可以要求举报人补充举报材料。

对于采用书面形式的实名举报，反垄断执法机构在案件调查处理完毕后，可以根据举报人的书面请求依法向其反馈举报处理结果。

第二十六条 反垄断执法机构经过对涉嫌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必要调查，符合下列条件的，应当立案：

- (一) 有证据初步证明存在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
- (二) 属于本部门查处范围；
- (三) 在给予行政处罚的法定期限内。

省级市场监管部门应当自立案之日起七个工作日内向市场监管总局备案。

第二十七条 市场监管总局在查处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时，可以委托省级市场监管部门进行调查。

省级市场监管部门在查处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时，可以委托下级市场监管部门进行调查。

受委托的市场监管部门在委托范围内，以委托机关的名义实施调查，不得再委托其他行政机关、组织或者个人进行调查。

(4) 동일한 사실에 대해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하였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

반독점 법집행기구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자료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서면 형태의 실명 신고의 경우, 반독점법 집행 기관은 사건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된 후 신고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신고 및 처리 결과를 법률에 따라 피드백할 수 있다.

제26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혐의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거쳐 아래의 요건에 부합하면 응당 입안해야 한다.

-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있다는 기초증거가 있음.
- (2) 해당 부서의 조사 및 처리 범위에 속함.
- (3) 행정처분의 법적 기한 내에 있음.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입안일로부터 7 업무일 이내에 시장총국에 보고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27조 시장총국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처리시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조사의 진행을 위탁할 수 있다.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처리시 하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조사의 진행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받은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위탁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의 명의로 조사를 실시하며, 다른 행정기관·조직 또는 개인에게 조사를 재위

第二十八条 省级市场监管部门查处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时，可以根据需要商请相关省级市场监管部门协助调查，相关省级市场监管部门应当予以协助。

第二十九条 反垄断执法机构对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进行行政处罚的，应当在作出行政处罚决定之前，书面告知当事人拟作出的行政处罚内容及事实、理由、依据，并告知当事人依法享有的陈述权、申辩权和要求听证的权利。

第三十条 反垄断执法机构在告知当事人拟作出的行政处罚决定后，应当充分听取当事人的意见，对当事人提出的事实、理由和证据进行复核。

第三十一条 反垄断执法机构对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作出行政处罚决定，应当依法制作行政处罚决定书，并加盖本部门印章。

行政处罚决定书的内容包括：

- (一) 当事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等基本情况；
- (二) 案件来源及调查经过；
- (三) 违反法律、法规、规章的事实和证据；
- (四) 当事人陈述、申辩的采纳情况及理由；
- (五) 行政处罚的内容和依据；
- (六) 行政处罚的履行方式和期限；

탁하면 안된다.

제28조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처리시, 수요에 따라 관련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조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협조해야 한다.

제29조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 결정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의 내용 및 사실, 이유,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에 따라 진술권, 변호권 및 청문요청권을 향유함을 통지해야 한다.

제30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당사자에게 행정 처벌 결정을 통지한 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

제31조 반독점 법집행기관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행정 처벌을 결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결정서를 작성하고 부서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처벌결정서의 내용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등 기본 상황;
- (2) 안건의 출처 및 조사경과;
- (3)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 (4) 당사자 진술·항변의 채택상황 및 이유;
- (5) 행정처벌의 내용 및 근거;
- (6) 행정처벌의 이행방식과 기한;

(七) 申请行政复议、提起行政诉讼的途径和期限；

(八) 作出行政处罚决定的反垄断执法机构的名称和作出决定的日期。

第三十二条 涉嫌滥用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在被调查期间，可以提出中止调查申请，承诺在反垄断执法机构认可的期限内采取具体措施消除行为影响。

中止调查申请应当以书面形式提出，并由经营者负责人签字并盖章。申请书应当载明下列事项：

- (一) 涉嫌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事实；
- (二) 承诺采取消除行为后果的具体措施；
- (三) 履行承诺的时限；
- (四) 需要承诺的其他内容。

第三十三条 反垄断执法机构根据被调查经营者的中止调查申请，在考虑行为的性质、持续时间、后果、社会影响、经营者承诺的措施及其预期效果等具体情况后，决定是否中止调查。

反垄断执法机构对涉嫌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调查核实后，认为构成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不得中止调查，应当依法作出处理决定。

第三十四条 反垄断执法机构决定中止调查的，应当制作中止调

(7) 행정처벌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재심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제기의 경로와 기한;

(8) 행정처벌결정을 한 반독점 법집행 기구의 명칭과 결정일.

제32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혐의가 있는 경영자는 조사받는 기간 동안 조사중지를 신청하고, 반독점 법집행기구가 인가한 기한 내에 행위의 영향을 제거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조사중지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경영자의 책임자가 서명하고 날인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아래 열거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혐의의 사실;
- (2)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
- (3) 약속 이행 시한;
- (4) 약속이 필요한 기타 내용.

제33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피조사 경영자의 조사중지 신청에 근거하여, 행위의 성질·지속시간·결과·사회에 대한 영향·경영자가 약속한 조치 및 그 기대효과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후, 조사중지 여부를 결정한다.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를 조사·확인한 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중단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34조 반독점 법집행기구가 조사중지결정을 한 경우, 조사중지결

查决定书。

中止调查决定书应当载明被调查经营者涉嫌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事实、承诺的具体内容、消除影响的具体措施、履行承诺的时限以及未履行或者未完全履行承诺的法律后果等内容。

第三十五条 决定中止调查的，反垄断执法机构应当对经营者履行承诺的情况进行监督。

经营者应当在规定的时限内向反垄断执法机构书面报告承诺履行情况。

第三十六条 反垄断执法机构确定经营者已经履行承诺的，可以决定终止调查，并制作终止调查决定书。

终止调查决定书应当载明被调查经营者涉嫌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事实、作出中止调查决定的情况、承诺的具体内容、履行承诺的情况、监督情况等内容。

有下列情形之一的，反垄断执法机构应当恢复调查：

- (一) 经营者未履行或者未完全履行承诺的；
- (二) 作出中止调查决定所依据的事实发生重大变化的；

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사중지결정서에는 피조사경영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혐의 사실·약속의 구체적 내용·영향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조치·약속이행 시한 및 약속의 미이행 또는 완전하지 않은 이행시 법적결과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제35조 조사중지를 결정한 경우, 반독점 법집행기구는 경영자의 약속이행 상황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

경영자는 규정된 시한 내에 반독점 법집행기구에 서면으로 약속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36조 반독점 법집행기구는 경영자가 이미 약속을 이행했음을 확인한 경우, 조사종결 결정을 할 수 있고, 조사종결 결정서를 작성한다.

조사종결결정서는 피조사경영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혐의 사실·조사중단결정이 내려진 상황·약속(승낙)의 구체적인 내용·약속(승낙) 이행 상황·감독상황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아래 열거한 정형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조사를 재개해야 한다:

- (1) 경영자가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조사중지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三) 中止调查决定是基于经营者提供的不完整或者不真实的信息作出的。

第三十七条 经营者涉嫌违反本规定的, 反垄断执法机构可以对其法定代表人或者负责人进行约谈。

约谈应当指出经营者涉嫌滥用市场支配地位的问题, 听取情况说明, 开展提醒谈话, 并可以要求其提出改进措施, 消除行为危害后果。

经营者应当按照反垄断执法机构要求进行改进, 提出消除行为危害后果的具体措施、履行时限等, 并提交书面报告。

第三十八条 省级市场监管部门作出不予行政处罚决定、中止调查决定、恢复调查决定、终止调查决定或者行政处罚告知前, 应当向市场监管总局报告, 接受市场监管总局的指导和监督。

省级市场监管部门向被调查经营者送达不予行政处罚决定书、中止调查决定书、恢复调查决定书、终止调查决定书或者行政处罚决定书后, 应当在七个工作日内向市场监管总局备案。

第三十九条 反垄断执法机构作出行政处理决定后, 依法向社会公布。行政处罚信息应当依法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

第四十条 市场监管总局应当加强对省级市场监管部门查处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指导和监督, 统一执法程序和标准。

(3) 조사중지 결정이 경영자가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진실되지 않은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제37조 경영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법정 대리인 또는 책임자와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면담에서는 경영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지적하고,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경고 담화를 수행하며, 행위의 위험의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제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경영자는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요구 사항에 따라 개선하고 행동의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이행 기한 등을 제시하고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행정처벌미부과결정·조사중지 결정·조사종결 결정 또는 행정처벌 고지를 하기 전에, 시장총국에 보고하고 시장총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피조사경영자에게 조사중지결정서·조사종결결정서·조사재개결정서 또는 행정처벌결정서를 송달한 후, 7 업무일 내에 관련 결정서를 시장감독관리총국에 보고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39조 반독점 법집행기구는 행정처리 결정을 한 후 법에 따라 사회에 공포한다. 그 중 행정처벌정보는 법에 따라 국가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40조 시장총국은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조사처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법집행 절차와

省级市场监管部门应当严格按照市场监管总局相关规定查处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

第四十一条 经营者滥用市场支配地位的，由反垄断执法机构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并处上一年度销售额百分之一以上百分之十以下的罚款。

反垄断执法机构确定具体罚款数额时，应当考虑违法行为的性质、程度、持续时间和消除违法行为后果的情况等因素。

违反本规定，情节特别严重、影响特别恶劣、造成特别严重后果的，市场监管总局可以在第一款规定的罚款数额的二倍以上五倍以下确定具体罚款数额。

经营者因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滥用行政权力而滥用市场支配地位的，按照第一款规定处理。经营者能够证明其受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滥用行政权力强制或者变相强制滥用市场支配地位的，可以依法从轻或者减轻处罚。

第四十二条 反垄断执法机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泄露执法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个人隐私和个人信息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엄격하게 시장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조사처리 해야한다.

제41조 경영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반독점 법 집행기구는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1이상 100분의 1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반독점 법집행기구가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를 확정할 때에는 위법행위의 성질, 경위, 정도, 지속시간, 위법행위의 결과 제거 등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본 규정 위반의 상황이 특히 심각하고 영향이 특히 열악하며 특별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시장총국은 제1항에 규정된 벌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구체적인 벌금액을 정할 수 있다.

경영자가 행정기관 및 법률·법규의 수권을 받아 공공사무관리 기능을 보유한 조직의 행정권력 남용으로 인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경영자가 행정기관 및 법률·법규의 수권을 받아 공공사무관리 기능을 보유한 조직의 행정권력 남용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제로 남용하거나 위장된 형태로 남용한 경우,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제42조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사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 집행 과정에서 알

的，依照有关规定处理。

第四十三条 反垄断执法机构在调查期间发现的公职人员涉嫌职务违法、职务犯罪问题线索，应当及时移交纪检监察机关。

第四十四条 本规定对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调查、处罚程序未作规定的，依照《市场监督管理行政处罚程序规定》执行，有关时限、立案、案件管辖的规定除外。

反垄断执法机构组织行政处罚听证的，依照《市场监督管理行政处罚听证办法》执行。

第四十五条 本规定自2023年4月15日起施行。2019年6月26日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第11号公布的《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暂行规定》同时废止。

게 된 영업 비밀, 개인 사생활 및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3조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조사 기간 동안 발견한 공직자의 직무 위반 및 직무 범죄 혐의 단서는 즉시 규율 검사 및 감독 기관에 인계되어야 한다.

제44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조사·처벌절차에 대해 본 규정이 규정하지 않은 것은 <시장감독관리 행정처벌 절차 임시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시한·입안·안건관할과 관련된 규정은 제외한다.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행정처벌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 행정처벌 청문 임시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45조 본 규정은 202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19년 6월 26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명령 제11호로 공포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에 관한 잠정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